

2013년도 「창업맞춤형사업」 수시발굴연계 프로그램 [예비]창업자 4차 모집 공고

유망한 아이템을 보유한 (예비)창업자를 발굴하여 성공적인 창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'13년도 『창업맞춤형사업』 수시발굴연계 프로그램(4차) 지원 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3년 9월 24일

중소기업청장

1. 모집개요

□ 사업목적

-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(예비)창업자를 발굴하여 멘토링, 의무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성공적인 창업활동 지원

□ 모집규모

프로그램명	대상	지원예정인원*	신청자격
수시발굴연계 (4차)	내국인	65명 내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예비창업자- 또는 1년이내 창업기업 대표
	외국인	10명 내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거소증 소지자- 또는 장기체류자격(비자) 취득자

* 대상별 지원예정인원을 우선 선발하나, 신청인원 부족 또는 적격자가 없을 경우 통합하여 선정

※ 외국인 신청자 숙지사항(의무)

- 한국어로 문서작성이 가능하여야 함
- 외국인 중 예비창업자는 반드시 팀(외국인 1인+내국인 1인)으로 신청, 협약종료 3개월 전 팀원(내국인)을 공동대표로 하는 내국법인을 설립하고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유지
 - * 사업수행에 따르는 모든 책임은 법인 및 법인의 대표에 공동귀속
- 외국인 중 1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는 본인명의 사업자를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유지

- (정부지원금) 최대 5천만원 한도(총 사업비의 70% 이내)

구분	지원 한도	협약기간
제조 분야	5천만원 이내	10개월 이내
지식서비스 분야*	3.5천만원 이내	8개월 이내

* [붙임 1.] 지식서비스 분야 대상 업종 현황 참조

* 단, 지식서비스 분야에 해당되더라도 제조성 시제품 제작 등이 병행되는 경우, 제조분야로 신청가능

< 총 사업비 구성비율 >

총 사업비	정부지원금	창업자부담금	
		현금	현물*
100%	70% 이내	10% 이상	20% 이내

* 현물 : 인건비(신청자 본인 및 임직원), 보유 기자재 등을 계상

* [붙임 2.] 비목별 계상기준 참조

□ 지원내용

창업 자금	시제품제작비	인건비, 외주용역비, 재료비, 기자재 구입비 등	
	기술정보활동비	시험분석비, 제품인증비, 문헌구입비 등	
	마케팅비	국내외 전시회 참가비, 홍보비, 홈페이지 제작비 등	
창업 프로그램*	의무교육	회계, 법률, 경영 등 창업기본 교육	20h 이상
	특화 프로그램	투자유치, 판로지원, 기술지원 등	20h 이상
	멘토링	내·외부 멘토를 통한 기술·경영 멘토링	10h 이상

* 최종 선정자 본인은 창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창업프로그램(의무교육(90%이상) 및 멘토링(100%) 필수 이수

* 세부사항은 창업넷 '창업맞춤형사업' 자료실 → 수시발굴연계 프로그램 소개자료 참조

2 신청 및 선정

□ 신청기간 및 방법

- (신청기간) 2013년 9월 30일(월) ~ 10월 10일(목), 18:00 까지
- (신청방법) '창업지원 온라인관리시스템'을 통하여 신청
 - ☞ '창업지원 온라인관리시스템' (<http://startbiz.changupnet.go.kr/jiwon>)
 - 본 사업의 신청기회는 연간 단 1회로, 이전 공고에 신청하여 탈락한 이력이 있을 경우 신청불가

< 온라인 신청단계 >

- ① 접속 → ② 회원가입(개인회원) 및 로그인 → ③ 사업신청 → ④ 체크리스트 (자가진단 및 창업적성검사)작성 → ⑤ 기본정보 입력 → ⑥ 참여신청서 및 사업화계획서 업로드 → ⑦ 제출

□ 신청자격

○ 내국인

- (예비창업자)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(개인, 법인)을 하지 않은 자로서 협약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창업이 가능한 자
 - *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 정한 교원은 선정공고 후 협약체결 전까지 소속 기관장 명의의 창업승낙서(겸직 허가서) 제출 필수
- (1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) '12년 1월 1일 이후 창업(개인, 법인)한 자
 - * 개인사업자(법인전환 포함) : 사업자등록증명 상 '사업개시일(개업일)' 기준
 - * 법인사업자 : 법인등기부등본 상 '법인설립등기일' 기준
 - * 다수의 사업자(개인, 법인)를 보유한 경우, 최초 등록한 사업자의 사업 개시일 기준

○ 외국인

- (거소증 소지자) :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 동포로 신청일 현재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^{*}이 가능한 자

* 출입국관리사무소(사무출장소)에서 발급한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에 한함

- (장기체류자격(비자) 취득자) : 신청일 현재 장기체류자격(비자) 유효기간이 2년 이상이거나 2년 이상으로 연장가능하고, 외국인 등록사실증명^{*}이 가능한 자

* 출입국관리사무소(사무출장소)에서 발급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에 한함

□ 지원제외 대상

☞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(기업),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(기업)

* 단,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(프리워크아웃), 개인워크아웃에서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한 경우,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 면책 선고를 받은 경우,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등 정부·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(기업)은 신청 가능

☞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(기업),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(기업)([붙임 3] 참조)

* 중단자 및 중도포기자, '11년 창업지원사업에 팀으로 선정되어 수행한 경우 팀원도 신청불가

☞ 타 중앙정부, 지자체, 공공기관의 '12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(기업)

* 단, 본 사업의 최종선정 공고 직후 기수행 중인 지원사업의 협약종료를 증빙할 경우는 허용
* 삼기 (예비)창업자가 본 사업에 최종선정 될 경우, 지원결정 정부지원금에서 기수혜금액을 삭감(1천만원 초과 시) 후 지원

☞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(기업)

☞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(기업)([붙임 4] 참조)

※ 본 사업에 선정된 (예비)창업자가 삼기 사항을 위배하고 허위 신청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, 그 즉시 선정취소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

□ (예비)창업자 평가 및 선정 절차

○ 평가항목

구분	평가항목		세부내용
1차 (서류평가)	창업을 위한 준비성		유사직종 재직경험, 지식재산권 확보, 창업관련 교육 이수, 네트워크 보유 등
	창업아이템의 우수성		창업아이템의 독창성 및 차별성 창업아이템의 실현가능성
	창업사업화 계획의 적정성		사업화 추진계획의 적정성 소요예산 수립계획의 적정성
2차 (멘토링 및 발표평가)	멘토링 캠프	창업자의 의지 및 역량	교육 참여의 적극성, 사업화 추진의지, 의사소통 능력, 네트워크 및 대인관계 형성 능력, 창업 비전제시, 문제인지 및 해결능력(위기관리능력) 등
	발표 평가	창업아이템의 기술성	경쟁사의 모방가능성(경쟁사의 모방에 대한 대처방안), 기술적 차별성(제품 성능의 우수성 등)
		창업아이템의 사업성	예상 시장수요조사 결과, 창업계획, 생산계획, 홍보 및 판매전략, 창업아이템의 경쟁력 및 파급효과 등

- **(1차평가)** 신청자를 대상으로 창업을 위한 준비성, 아이템의 우수성 및 사업화계획의 적정성 등의 서류평가 실시
- **(2차평가)** 서류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멘토링 및 발표평가 실시
 - * 진행절차 : 멘토링캠프(2주 이내) → 사업계획서 수정 · 보완(5일) → 발표평가
 - **(멘토링캠프)** 창업자의 인성 · 의지 · 역량 및 사업계획서 수정 · 보완 등에 대한 캠프형 평가 실시
 - * 2주 이내 과정으로 자체교육 및 실습 등으로 구성, 세부 운영계획은 서류 평가통과자에 한하여 개별 안내(신청자 본인참석 필수이며 대리참석 불가)
 - **(발표평가)** 멘토링캠프를 통하여 창업아이템의 기술성 및 사업성 등에 대한 내용 보완 후 발표평가 실시
 - * 멘토링캠프 종료 후 5일간 발표평가자료 작성 및 제출
- **(최종선정)** 2차평가(멘토링캠프, 발표평가) 합산 결과 종합평점 70점 이상인 자 중 예산 범위 내에서 상위 순으로 75개 내외 선정

< 평가 절차별 선정 인원 >



□ 가점사항

- ☞ 신청 과제와 관련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보유중인 자
 - * 단, 권리권자에 한하여(전용실시권 포함), 출원은 제외
- ☞ 최근 2년 이내 중소기업청 주최 창업경진대회 입상자
 - * 본선 입상자에 한함
- ☞ 여성
- ☞ 장애인
- ☞ 최근 2년 이내 중소기업청, 전담기관, 주관기관 기술창업교육과정 이수자
 - * 단, '13.3.15. 이전 수료한 자에 한하며, 수료예정자는 가점 불인정

※ 각 항목별 1점을 부여(최대 4점)하여 서류평가 시 반영하며, 증빙서류 누락 시 가점취득 불가(신청서 제출 시 사업화계획서에 첨부, 추후 제출 불가)

3. 추진절차 및 일정



* 상기 일정은 예정사항이며, 추후 변경될 수 있음(창업넷 공지사항 게시)

4. 유의사항

-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, 선정 취소,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
- '13년도 중소기업청 '창업사업화 지원사업'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(기업)는 본 사업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
 - * [붙임 3.] 중소기업청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현황 참조
- '13년도 타기관의 창업지원사업(타 정부부처, 지자체, 공공기관 등)에 이미 선정된자가 본 사업에 중복으로 선정되었을 시,
 - 타 창업지원사업 선정을 포기하고 본 사업과 협약을 체결할 경우, 정부지원금 전액 지원
 - 타 창업지원사업과 본 사업을 동시에 수행할 경우, 타 창업지원 사업 수혜금액을 제외하고 정부지원금 지원
-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, 해당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 (예비)창업자에게 귀속됨

5. 문의처

- 사업관련 문의
 - (창업진흥원) 창업사업화팀, (042)480-4342~8
- 창업지원 온라인관리시스템 관련 문의
 - (창업진흥원) 정보전략팀, (042)480-4373

【붙임 1.】

지식서비스분야 대상 업종 현황

□ 소분류가 S/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

대분류	중분류	소분류	대분류	중분류	소분류
기계·소재	정밀생산기계	CAD/CAM 관련 S/W	정보통신	이동통신	이동통신 서비스
	에너지/환경 기계시스템	에너지/환경기계시스템 관련 S/W		디지털방송	디지털 방송 서비스 디지털 방송 콘텐츠
	요소부품	요소부품 관련 S/W		광대역 통합망	서비스 및 제어
	로봇/자동화 기계	로봇 설계기술		홈네트워크	홈네트워크 응용 및 서비스 기술
		로봇 제어 및 지능화기술		RFID/USN	RFID/USN 서비스
		로봇/자동화기계 관련 S/W		U-컴퓨팅	U-컴퓨팅 플랫폼 및 응용기술 서버기술
	산업/일반기계	산업/일반기계 S/W		소프트웨어	임베디드 SW SW 솔루션
	조선/해양시스템 관련 SW	조선/해양 시스템 관련 S/W			System Integration Internet SW
	항공/우주시스템	항공/우주 시스템 관련 S/W			컴퓨터 그래픽 가상현실
	나노·마이크로 기계시스템	나노·마이크로 기계시스템 관련 S/W			콘텐츠 창작 기획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유통
전기전자	주조/용접	주조/용접 관련 S/W			게임 및 u-러닝
	소성가공/분말	소성가공 관련 S/W	정보보호	서비스 및 응용보안	서비스 및 응용보안
화학	청정생산	환경친화적 제품설계기술			네트워크 시스템 보안
	반도체소자 및 시스템	설계 Tool	ITS/텔레매틱스	ITS 응용서비스 텔레매틱스 응용서비스	ITS 응용서비스 텔레매틱스 응용서비스
바이오·의료	화학공정	공정시스템기술			전력계통 감시·운영 기술 전력계통 계획 기술 전력시장 운용기술 수요예측·관리 기술
	바이오공정/기기	바이오엔지니어링 기술	총배전 계통	전력IT	IT기반 고부가 서비스 기술 지능형 전력망 플랫폼 기술
	치료기기 및 진단기기	지능형 관독시스템			노심해석 기술 원전 안전평가 기술 신원전 기술
	의료정보 및 시스템	한의 정보 표준시스템			
		원격 및 재택 의료기기			
		의료정보표준화			
		U-EHR (electronic health record)			
		병원의료정보 시스템 및 설비			
		기타 의료 정보 시스템			

【불임 2】

**「창업맞춤형사업」
비 목 별 계 상 기 준**

비 목	계 상 기 준
창업자 지원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시제품제작비(총 사업비의 50% 이상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인건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창업자 및 창업기업에 소속된 기존 직원이 담당과제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과제 참여율에 따라 현율로만 계상 가능. 본 사업을 위하여 협약만료일 3개월 이전까지 신규 채용하는 인력(4대보험 가입)에 한하여 인건비 적용범위 내에서 현금으로 계상 가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중소기업청 또는 타 기관 과제의 참여율의 합이 100%를 초과할 수 없음 * 인건비는 전년도 근로소득에 준하여 지급하며(근로소득원천징수 확인서), 근로소득이 없을 경우 아래의 기준을 적용한다.(100% 참여 시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학사과정(학사 미만 포함) : 월 120만원, 학사(석사과정 포함) : 월 170만원 석사(박사과정 포함) : 월 220만원, 박사 : 월 270만원 · [별표4호]의 지식서비스분야 업종의 경우 시제품제작비의 80%까지 인건비 계상 가능, 이외 업종은 시제품제작비의 50%까지 인건비 계상 가능 - 외주용역비 : 창업자 본인이 시제품제작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, 외주용역계약은 (세금)예산서 발행이 가능한 회사에 한함. 개인과의 외주용역계약 불가 - 재료비 : 시제품제작에 투입되는 물품으로서, 부품 또는 가공품 등의 물품 구입에 소요되는 경비(견풀, 시약, 재료 구입비 등) - 기자재 구입비 : 시제품제작을 위해 활용되는 자산성 물품 구입 등(총 사업비의 10% 이내 계상) - 기자재 임차료 : 시제품제작을 위해 활용되는 자산성 물품 임차에 소요되는 경비(실험 장비의 임차비와 관련 부대비용) - 기술이전비 : 시제품제작을 위해 필요한 기술을 이전받기 위해 사용하는 금액으로 법적 권리를 보장받는 계약의 경우에 한하여 집행(총 사업비의 20% 이내 계상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술정보활동비(총 사업비의 20% 이내 계상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시장정보 획득, 보완기술 교육, 도서 등 문헌 구입비 등(회의 관련 식대비 불인정) - 창업과제의 사업화를 위한 지식재산권 출원·등록비, 시험분석료, 제품인증비 등의 소요 비용 • 마케팅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창업과제의 마케팅활동을 위한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, 제품홍보물 제작 및 홍보비, 카탈로그 제작비, 영상 제작비, 온라인 쇼핑몰 입점비, 홈페이지 또는 쇼핑몰 제작비

【불임 3.】

중소기업청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현황

'09년 ~'12년(지원 제외 대상사업)

실험실창업 지원사업,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,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, 연구원특화 예비창업자 육성사업, (제조기반)창업아이템 상품화 지원사업, 아이디어상업화 지원사업(제조, 지식), 선도벤처연계 창업지원사업, 유망특허활용 기술창업지원사업, BI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사업, 앱 창업 전문기관 운영사업(앱 개발자금, 앱 사업화자금), 청년창업사관학교

* 삼기 사업에 선정되어 수행 중이거나 수행완료한 자는 본 사업에 참여불가

'13년(증복지원 제외 대상사업)

연구원특화 예비창업자 육성사업, 선도벤처연계 창업지원사업, 글로벌청년창업활성화 지원사업, 창업선도대학 창업사업화 지원사업, 스마트 앱 창작터(창업팀), 스마트 벤처창업학교(청년창업자), 청년창업사관학교

* 증복지원은 가능하나, 최초 선정된 사업과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수행

【불임 4.】

지원제외 대상 업종

No	대상 업종	코드번호 세세분류
1	금융 및 보험업	K64~66
2	부동산업*	L68
3	숙박 및 음식점업(호텔업, 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)	I55~56
4	무도장 운영업	91291
5	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	91112
6	기타 캠블링 및 베팅업	9124
7	기타 개인 서비스업(산업용 세탁업은 제외)	96
8	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	-

* 단, 전용면적 149㎡ 이하 주택의 주택임대사업자등록자는 예비창업자로 간주하여 신청 허용(임대사업을 위한 사무실을 확보하였거나 직원을 고용한 자는 신청 불가)

*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(통계청, www.kostat.go.kr) 참조